

2020 인천VR·AR기업 퍼블리싱 지원사업  
사업 수행 및 정산 지침

## < 목차 >

1. 정의
2. 목적
3. 준용규정
4. 추진체계
5. 신청 및 선정
6. 집행 및 정산
7. 성과평과 및 사업관리

## I. 정의

1. ‘참여기업’은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기관인 인천VR·AR기업 퍼블리싱 지원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을 말한다.
2. ‘운영기관’,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을 선정한 인천테크노파크 콘텐츠지원센터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은 인천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 총괄 주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말한다.
4. ‘공급처’는 참여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인천VR·AR기업 퍼블리싱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용역사를 말한다.
5. ‘심의위원회’는 참여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하는 위원회를 말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인천VR·AR제작거점센터 자문위원회로 구성되고 운영은 운영기관의 결정에 맡긴다.
6. ‘지원금’은 운영기관 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7. ‘자부담(기업매칭금)’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8. ‘총사업비’는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 기업이 부담하는 자부담을 합친 사업비를 말한다.
9. ‘지원프로그램’은 총 사업비 내에서 인천VR·AR기업 퍼블리싱 지원사업으로 참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10. ‘분류(대분류·상세분류)’는 참여기업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급처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11. ‘결과물’은 결과보고서 혹은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결과물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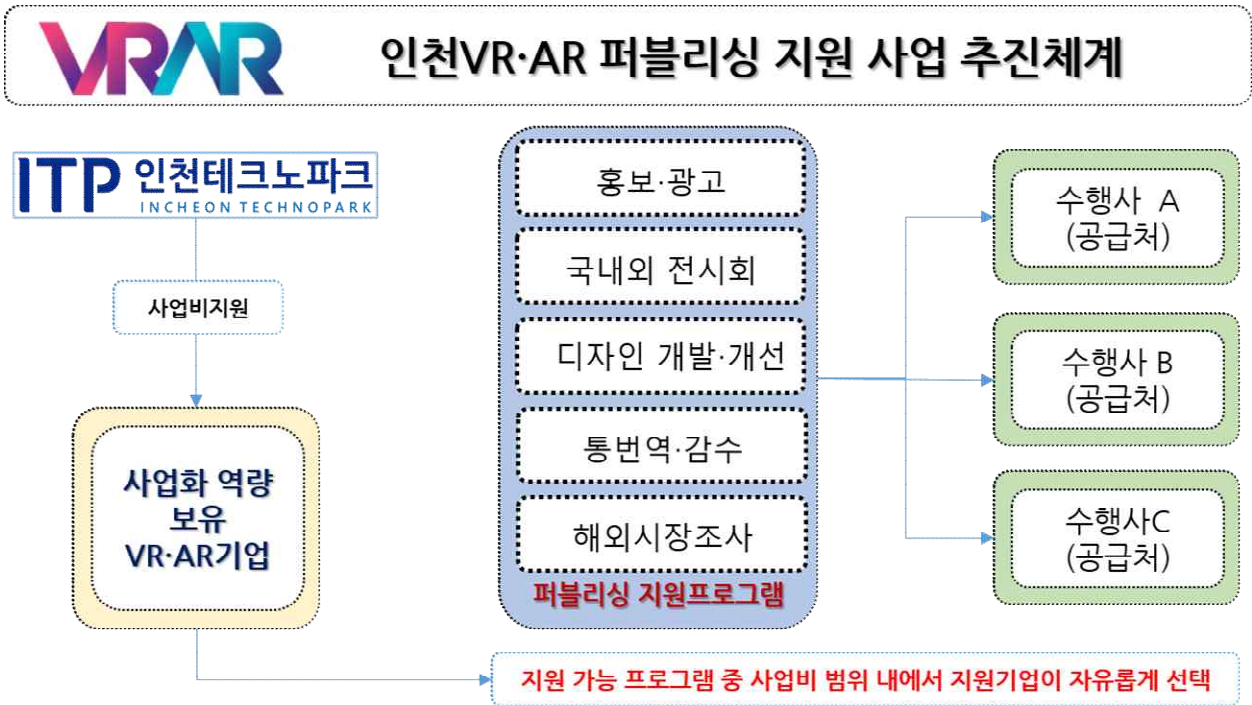
## II. 목적

1. 본 지침은 인천VR·AR퍼블리싱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의 사업비 사용 계획 제출 시 편성기준으로 활용한다.
2. 본 지침은 인천VR·AR퍼블리싱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참여기업, 공급처의 정산기준으로 활용한다.
3. 본 지침은 인천VR·AR퍼블리싱 지원사업 중간보고, 결과보고 시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검토 정산기준으로 활용한다.

## III. 준용규정

1. 본 지침은 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2020.2) 및 수출바우처 서비스 활용 및 정산 가이드를 일부 수정 준용한다.
2. 본 지침은 인천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정산 지침을 일부 수정 준용한다.
3. 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의 편성 및 정산 규정은 정보통신방송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2020.01),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2020.01)에 따른다.

#### IV. 추진체계



구 분	주 요 업 무
인천테크노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총괄 및 사업추진방침 수립</li> <li>○ 과제 평가·선정,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li> <li>○ 과제 별 진도 점검, 중간 평가, 예산집행 및 최종평가 등 관리 일체</li> </ul>
참여기업 (협약당사자)  +  공급처 (참여기업 계약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개발완료 및 마케팅 계획 수립</li> <li>○ 퍼블리싱 수행 공급처 확보</li> <li>○ 공급처의 결과물 도출 지원·검수, 이행 보증 및 정산 보고</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업에 퍼블리싱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li> <li>○ 퍼블리싱 지원 결과물 도출</li> <li>○ 참여기업에 거래 증빙 자료 제출</li> </ul>

1.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 ② 참여기업의 평가, 선정, 관리 및 집행 점검
- ③ 참여기업의 사업 결과, 정산 총괄 검토·점검·평가
- ④ 참여기업의 퍼블리싱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운영,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 ⑤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인천광역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참여기업)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퍼블리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지침의 숙지와 준수
- ② 협약상의 자부담 부담
- ③ 공정하고 투명한 정산 및 회계 처리
- ④ 퍼블리싱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 계획에 따른 성실한 사업추진 및 사업목표 달성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교육, 세미나 등 행사 참석
- ⑥ 사업 진행 중, 완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제출 요구 등의 협조

## V. 신청 및 선정

1. (신청자격 및 제한) ① 인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 개발 완료된 VR·AR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으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포함되어 신청하는 경우
2.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 접수마감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4.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5.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및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6. 2020년 인천VR·AR융합 콘텐츠 실증 및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중인 기업 (컨소시엄 포함) 중 동일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2.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3.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5.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2. (신청서의 제출) ① 인천VR·AR기업 퍼블리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천VR·AR제작거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사업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름)

나. 기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첨부서류

순번	붙임서류 목록	부수	비고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서식1]
2	발표(PPT) 자료	1	
3	사업비 활용 계획서	1	[서식2]
4	지원사업 서약서	1	[서식3]
5	청렴이행각서	1	[서식4]
6	현금출자(기업매칭) 협약서	1	[서식5]
7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서식6]
8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서	1	[서식7]
9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	
10	2018, 2019년 재무제표	각1	
11	사업자등록증	1	
12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	
13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	

3. (평가 및 선정) ① 운영기관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순번	평가항목	세부내용
1	사업실적(20%)	콘텐츠 개발 완료 정도
2	경쟁력(30%)	타사 대비 기술 경쟁력 보유정도 시장진입 가능한 경쟁력 보유정도 시장선호도 및 트렌드 반영정도
3	진행도(20%)	퍼블리싱 경험 보유정도 마케팅 전담인력 보유정도
4	준비도(30%)	퍼블리싱을 위한 인프라, 인증 등 보유정도 퍼블리싱을 위한 전략, 계획의 보유정도 퍼블리싱에 대한 의지, 개발 활동 추진 정도

② 평가는 인천VR·AR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 점수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1차 선정한다.

③ 심의위원회 평가 점수 결과 순으로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활용계획서 단가책정 적정성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최종 선정한다.



(1) 홍보·광고

① 인쇄물·영상·홈페이지·APP등 제작 지원

- 지원기업의 홍보용 홈페이지, APP 및 콘텐츠 페이지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서로 다른 콘텐츠, 디자인 복수 지원 가능(3종까지 인정)
  - ※ 한국어/외국어 병용으로 홍보·광고물 제작 시 기본 한국어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홍보·광고 지원비로, 외국어 홍보·광고물 제작은 통번역 지원비로 구별하여 지원
  - ※ 기존에 제작된 인쇄물·영상 등의 외국어 번역은 통번역 지원비 편성

② 신문잡지, TV, PPL, SNS(온라인) 등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 국내외 송출 또는 발행되는 TV, 신문, 전문잡지, 정기간행물 등 광고 게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방송, 드라마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홍보하는 간접광고 및 온라인, SNS를 활용하여 광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동영상 활용 홍보 시 영상 제작비용은 홍보·광고 지원비로 편성

(2) 1인미디어 광고·홍보

① 국내외 1인미디어 채널을 통한 홍보를 위하여 제작되는 영상 콘텐츠 비용 지원

- ※ (대분류)홍보·광고-(상세분류)영상제작과 별도 비용 산정 가능

②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보유한 채널을 통한 홍보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참여한 영상의 송출 비용 지원

- ※ 일반 TV, 신문잡지 등에 홍보하는 비용은 (대분류)홍보·광고로 편성

(3) 전시회

① 콘텐츠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 참가 관련 등록비, 부스 임차료, 부스 설치비(부스 디자인 비용 포함), 샘플 운송비(편도, ICBM, 해상기준) 등
  - ※ 협약 기간 내에 개최-종료되는 전시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타 지원사업(정부부처·지자체·기관·사단법인 등)을 통하여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중복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 ※ 체재비, 인편 교통비, 보험료, 기타 수수료 등 제외
  - ※ 현지 통역비 등은 통번역 지원비로 편성

②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시연회 및 해외 바이어 국내 초청 상담회·설명회 개최/참석

- 상담회·설명회 개최를 위한 장소 임차비, 장치설치비, 물품 운송비(편도, ICBM, 해상기준) 지원
- 해외 바이어 국내 초청 시 초청관련 비용(운임, 숙박비) 지원
  - ※ 지원기업이 지출하는 교통운임, 현지 체재비, 다과비 등 제외

(4) 디자인 개발·개선

① 브랜드 개발 및 매뉴얼 제작

- 기업 및 관련 콘텐츠 네이밍 브랜딩 컨설팅, 해외 진출 시 브랜드 현지화 컨설팅 지원
- 콘텐츠 및 서비스 매뉴얼 제작비용 지원

② 기업의 BI·CI 개발비 지원

③ 기타 디자인 컨설팅 비용 지원

(5) 특허·인증

① 우수 콘텐츠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PCT 등 지원(등록, 출원비 및 연차료 등 지원)

② 국내외 인증 취득에 직접적 소요되는 시험, 인증비, 컨설팅 비용 등 지원

- ※ 사업공고일 ~ '20.11.30 내에 인증 취득, 특허 출원 등이 완료 되어야 함

(6) 통번역

① 외국어 자료 통번역으로 한국어↔외국어, 외국어↔외국어 모두 가능

② 계약서류, 매뉴얼, SW, 홈페이지 등 수출 관련 자료 번역 지원

③ 해외 비즈니스 통역 서비스 지원

- ※ 통번역 지원은 공급처가 프리랜서(개인)인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되 특수 언어의 통번역이나 불가피하게 프리랜서를 활용해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능여부 심사

(7) 해외시장조사

① 조사·정보 지원

-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사 동향조사
- 바이어 발굴조사, 바이어DB타겟 마케팅 등
  - ※ 바이어 국내 초청,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 등은 전시회 지원비로 편성
  - ※ 수출 관련 문서 작성 및 번역등 통번역 지원비로 편성
  - ※ 해외 진출 전략, 경영 멘토링, 투자유치, 중장기 전략 컨설팅 등 지원 제외

② 국외기업(바이어) 신용조사

- 국외기업(바이어)의 신용등급 조회를 위한 서비스 비용 지원

## Ⅵ. 사업비 관리·사용 및 정산

1. (관리기준) ① 참여기업은 본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침에 없는 사업비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②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및 서류 제출을 요청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용기준) ① 사업비는 참여기업이 제출한 수행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승인 후 사용한다.  
②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전용 사업비 계좌와 연결된 사업비 카드 사용 및 직접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③ 참여기업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관서가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사업비 사용) ① 참여기업은 퍼블리싱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공급처를 선정하여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은 각 지원 프로그램 별 제시된 단가표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해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공급가액이 지원 프로그램 금액보다 초과금액은 참여기업이 부담한다.  
④ 참여기업은 공급처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는 경우만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참여기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급처를 선택하고 공급처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하면 참여기업과 공급처 간 서비스 사용-제공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참여기업과 공급처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양식이 없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⑥ 참여기업은 정부·지자체·기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행한 동일한 과제에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이중지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운영기관에 사전 확인한다.

<인천VR·AR 퍼블리싱 지원 분류 별 단가표>

대분류	상세분류	단가범위(한도)※ <sup>1</sup> (단위 : 천원)	비고
홍보·광고	인쇄물 제작	4,000 ~ 7,000	
	영상 제작	4,000 ~ 7,000	
	홈페이지·APP	2,000 ~ 5,000	
	TV·잡지·신문·PPL	공급처 견적서 제출 후 단가 심의 후 결정※ <sup>2</sup>	단가산정 심의위원회에 의한 지원금 범위 결정 요함
1인 미디어 홍보·광고	영상 제작 및 송출	공급처 견적서 제출 후 단가 심의 후 결정※ <sup>2</sup>	단가산정 심의위원회에 의한 지원금 범위 결정 요함
전시회	국내전시회참가	3,000 ~ 6,000	
	국외전시회참가	4,000 ~ 8,000	
디자인 개발·개선	브랜드개발	14,000 ~ 24,000	
	CI·BI	~ 20,000※ <sup>3</sup>	
	디자인 기타	7,000 ~ 12,000	
특허·인증	국내특허 출원	2,000 ~ 4,000	
	국외특허 출원	2,000 ~ 6,000	
	국내인증	2,000 ~ 10,000※ <sup>4</sup>	
	해외인증	4,000 ~ 8,000	
통번역	외국어 통번역	공급처 견적서 제출 후 단가 심의 후 결정※ <sup>2</sup>	단가산정 심의위원회에 의한 지원금 범위 결정 요함
	감수	통번역 지원액의 50%※ <sup>2</sup>	단가산정 심의위원회에 의한 지원금 범위 결정 요함
해외 시장조사	시장조사·신용조사	2,000 ~ 4,000	

- ※ 분류 별 지원금은 부가세를 지원하지 않음(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외)
- ※ 소급적용불가가 원칙으로 사업공고일부터 '20.11.30까지 공급처와 작성한 계약 인정 (기간 내 결과물 도출 의무)
- ※1. 단가범위(한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천지역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지원프로그램 서비스 메뉴판 표준단가표 준용
- ※2. 표준단가적용이 어려운 항목으로, 수요기업이 제출한 견적서에 따라 단가산정 적정성 심의위원 평가를 통하여 지원금 범위를 최종 결정
- ※3. CI·BI단가 한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단가표 준용
- ※4. (국내인증 단가 산정 범위) 제품 인증 : 2,000 ~ 4,000천원, 경영 인증 : 4,000~7,000천원, 품질 검증 : 5,000 ~ 10,000천원

4. (이자관리) 참여기업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는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5. (사업비정산) ① 사업비 정산은 운영기관 또는 지정된 위탁회계법인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지원금과 자부담을 합산한 총사업비 금액으로 실시한다.
  - ② 참여기업은 중간보고, 결과보고 및 운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보고서와 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③ 참여기업은 사업비의 정산을 위하여 공급처의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을 모두 제출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제5장 사업비 정산 제22조제3항에 의거한 영수증만 인정된다.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제5장 사업비 정산 제22조제3항>

정산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갈음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4.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포함된 매출전표

④ 참여기업은 공통 정산 증빙 외에 운영기관에서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인보이스 및 환율 계산표 등 추가로 요청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참여기업은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을 정산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이때 반납액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이 해당하는 비율만큼 반납하고 운영기관이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참여기관은 통보 받은 정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6.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처리) 참여기업이 정산금 및 환수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대한 기준 제5장 제19조에 따라 처리한다.

## VII.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1. (협약의 체결) 협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수행계획서
  - ② 협약서
  - ③ 청렴이행각서
  - ④ 보안서약서
  - ⑤ 사업비 통장사본(자부담 입금 확인)
  - ⑥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 ⑦ 사업자등록증
2. (협약의 변경) 참여기업은 지원 프로그램의 변경 및 예산 변경에 대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이때 변경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사업포기) 참여기업은 협약 체결 전까지 별도 제재 없이 사업 참가를 포기할 수 있으나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한 이후 참여기업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 및 다음 년도 동일 사업에 대하여 참가 자격을 상실한다.
3. (협약의 해약) ①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가.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나. 참여기업의 사업비 유용, 별도 공모사업 규정위반 등 중대한 협약 위반② 운영기관은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관리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을 취할 수 있다.